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6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유정인, 강동길, 김태수,
민병주, 박 석, 박승진,
신동원, 이민석, 이봉준,
이성배, 임종국, 최재란,
최진혁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9조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18조제6항에 따라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요건이 총회 의결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시공자 선정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공공지원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하여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공자 등의 선정기준 중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함(안 제 77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제1항 중 “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”를 “총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공자 등의 선정기준에 대한 적용례)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7조(시공자 등의 선정기준) ① 법 제118조제6항에 따라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<u>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</u> 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77조(시공자 등의 선정기준) ① ----- ----- <u>총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문서번호

2023101600000052

비대상사유서

요청인 : 유정인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박지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17.

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

목 차

1. 판단 근거
2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7조(시공자 등의 선정 기준)제1항의 변경을 통해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할 때 총회의결 요건에서 ‘조합원의 과반수 찬성’의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박지영

☎ 02-2180-7952
e-mail : 7magic7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